

의안번호	제101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
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12월 1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2월 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명령등 권한이 시장·군수에 위임됨에 따라(법률 제11445호, '12.5.23)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<부칙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생략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

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대기환경보전법
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., 2012.5.23.>

1.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
2.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
3. 저공해엔진(혼소엔진을 포함한다)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

② ~ ⑫ “생략”